(재)경북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-601호

「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」
"청년창업 및 이전기업 지원사업"
청년창업 2차년도 참여기업 모집 공고

경상북도와 영천시가 주최하는 지역 경제 활성화 및 활력 제고를 통해 영천시 금호읍으로의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한 「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」의 일환으로, 지역 산업 생태계 조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'청년창업 및 이전기업 지원사업' 의 청년창업 2차년도 지원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2026년 11월

(재)경북테크노파크 원장

Ⅰ 사업개요

□ 사 업 명 : 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

□ 세부사업 : 청년창업 및 이전기업 지원사업

□ 모집기간 : 공고일 ~ 2026. 12. 4.(금) 18:00

□ 모집정원 및 대상

구분	모집 정원	자격요건	
		대상	세부 자격
■ 청년창업	7개 사 이내	2026년 1기 협약 기업 (2차년도)	- 2026년 6월 1일(협약일 기준)자로 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 청년창업 분야 최초 협약을 체결한 창업기업

※ 최초 협약일 기준 3개월 내 이전한 사업장 본점(금호읍 내) 및 대표자 거주지(영천시 내)는 최초 협약일로부터 3년간 유지 필수.

※ 심사 요건(자격요건 및 점수)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모집 정원에 미달하여 선발할 수 있음.

※ 상기 지원을 수혜받는 경우, 타 창업 관련 사업화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가 불가함.

II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

□ 청년창업 2차년도 :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

1) 2026년 6월 1일(협약일 기준)자로 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 “청년창업 및 이전기업 지원사업” 청년창업 분야 최초 협약을 체결한 창업기업

2) 1차년도 협약에 따른 주소 유지 의무(사업장 본점 금호읍 내, 대표자 거주지 영천시 내)를 성실히 이행 중인 기업

※ 1차년도 협약 후 사업을 포기하였거나 협약이 해지된 기업은 신청 불가

□ 지원 제외 대상 : [별표 1] 참조

III 지원내용

가. 공통사항

○ 협약기간 : 2027. 1. 1. ~ 2027. 6. 30.(6개월, 예정)

○ 지원내용

구 분		세 부 내 용
지원금		- 시설·장비 운영, 시제품 제작, 홍보·마케팅, 특허 출원 등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
연계지원	맞춤 컨설팅	- 기업의 수요 및 상황에 맞는 전문가 연계 맞춤형 컨설팅 지원
	각종 교육	- 창업기업이 필요로 하는 각종 교육 제공
	이웃사촌마을 연계 지원	- 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 내 타 사업 연계 프로그램 지원 (예시) ‘자율형 공동스토어 운영사업’ 연계 판매 지원 등

※ 연계지원 프로그램의 경우, 별도 신청 및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.

나. 청년창업 2차년도

○ 지원금: 이주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소요되는 창업 인프라(공간, 장비 등) 임차, 시제품 제작, 홍보・마케팅, 지식재산권 확보 등의 사업화 자금 지원 (2차년 최대 60,000천원 / 지원금의 10% 현금 부담)

구 분	최대 지원금(A)	기업부담금(B)	합계(C=A+B)
지원금(원)	60,000,000	6,000,000	66,000,000

※ 1차년도 결과 및 2차년도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(2년간 최대 100,000천원)

※ 부가가치세 사업비 사용 불가 / 지원금은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 가능.

※ 위 지원금은 선정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(감액 등)

Ⅳ 신청방법 및 접수·문의처

☐ 접수기간 : 공고일 ~ 2026. 12. 4.(금) 18시 까지

☐ 접수방법 : 제출서류에 명시된 순서대로 파일명을 변경 및 압축(zip) 후 제출

홈페이지 접속	→	공고·안내	→	공고검색	→	신청하기
www.gbtp.or.kr		메인화면 사업안내		본 사업 공고문 검색		공고 게시글 하단 '신청하기'

※ **접수기간 종료 후 별도 제출 절대 불가(접수종료일 1일 전 제출 권장)**

※ **접수 시스템 미숙 및 오류**로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, 해당 책임은 **지원자(기업)에게 있음.**

☐ 문 의 처 : ☎ 054-339-3353(경북TP 기업지원단 지역기업활력지원실)

☐ 제출서류

필수 제출	①	**제출서류 체크리스트 및 확인서** 1부	☐
	②	(서식1) **지원사업 상세계획서(2차년도)**(한컴오피스) 1부	☐
	③	(서식2) **개인(기업)정보 수집·활용 동의서** 1부	☐
		(서식3) **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** 1부	☐
		(서식4) **평가기준 및 결과 수락 확약서** 1부	☐
	④	**사실증명(총사업자 등록내역)** 1부 ※ 홈텍스 – 대표자 로그인 후 발급(사실확인 후 발급증명)	☐
	⑤	**사실증명(사업자등록변경내역 – 주소변동내역)** 1부 ※ 홈텍스 – 사업자 로그인 후 발급(사실확인 후 발급증명)	☐
	⑥	**사업자등록증명원** 1부	☐
	⑦	**주소 이력이 확인 가능한 대표자 주민등록표 초본** 1부	☐
	⑧	**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(법인/대표자)** 1부 ※ 개인사업자인 경우, 대표자 본인만 제출	☐
	⑨	**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** 1부 ※ 단, 1인 기업인 경우 제외	☐
	⑩	**2025년 표준재무제표증명 혹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**	☐
해당 시	⑪	공장등록증, 회사소개서, 제품 홍보자료 등 각 1부	☐
	⑫	지식재산권·인증 관련 : 특허, 벤처기업, 메인비즈, ISO 등 각 1부	☐
	⑬	(서식5) 신규인력 채용 예정 확인서 1부	☐
	⑭	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(법인인 경우) 1부	☐

※ **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 필수**

※ 필수 제출서류 **누락 시 지원 제외 대상**

Ⅴ 선정평가 절차 및 기준

가. 선정평가 절차

공고·모집		(1차) 사전검토		(2차) 선정평가		최종 결과발표
공고일 ~ '26. 12. 4.	⇨	'26. 12. 1주차 (예정)	⇨	'26. 12. 1주차 (예정)	⇨	~ '26. 12. 3주차 (예정)

※ 위 일정은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.

※ 2차년도 선정평가는 1차년도 결과평가와 함께 진행할 수 있음.

나. (1차) 사전검토

1) (사전검토) 旣개발 및 旣지원 1차년도 연계성 여부 / 지원 제외 대상 여부

2) (실태조사 또는 면담) 신청 기업의 신청 자격, 운영체계, 기술성 및 사업성, 계획의 적정성 등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 또는 면담(유선 등)을 실시할 수 있으며, 반드시 대표자와 면담을 진행함

다. (2차) 선정평가(대표자 필수 참석)

1) 평가방법 :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운영(대면평가)

2) 발표평가 시 대표자가 미참석할 경우, 자동 탈락 처리될 수 있음.

3)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, 대표자의 발표내용 등을 검토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, 지원금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선정

4) 신청된 지원금은 선정평가위원회의 검토 의견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.

4) 종합평가에 따른 우선순위, 신청기업의 사업수행 역량 등을 고려하여 사업 선정을 진행하며,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“탈락”, 70점 이상인 기업들 중 최상위 득점 순서대로 지원 건수만큼 “최종선정” 함

5) “최종선정” 기업을 대상으로 협약을 진행하며, 1개월 이내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(사업 포기, 자격 박탈)이 발생 시, 70점 이상인 기업 중 차상위 득점을 한 기업과 협약 진행 가능

라. 평가기준

평 가 항 목	세 부 내 용
창업자의 역량	• 창업자의 사업 수행 능력 (전공, 경력, 프로젝트 수행실적 및 사업계획서 작성의 충실성)
아이템의 기술성(구체성)	• 신청기업 제품(서비스) 개발의 주요방안 • 참여 아이템의 창의성 및 원천기술 등 보유 여부
사업성	• 경쟁 제품 대비 경쟁력 및 유사 아이템과의 차별성 • 마케팅 전략의 합리성 및 수익창출 가능성 • 사업화 전략의 우수성 및 실현 가능성
계획의 성장가능성	• 직전 차년도 사업 수행과의 연계성 • 본 사업 수행을 통한 기대효과 제시의 타당성 • 사업 계획 및 결과물에 대한 활용 계획의 명확성 • 자금조달 계획 및 지원금(사업비) 사용 계획의 합리성
정착 및 이탈가능성	• 대표자·임직원의 정착 의지(이주 가능성) • 사업 종료 후 정착 계획 및 의지
지역연계성	• 영천지역(금호읍) 활동 계획 및 연계성

Ⅵ 사업운영 및 기업모니터링

□ **사업비 구성** : 사업비 구성은 '**지원금**'과 기업이 부담하는 '**기업부담금**(현금)'을 합한 금액으로 함(현물은 선택 사항)

※ 기업부담금은 지원금의 10%(현금 필수) 이상으로 함

(예시) 지원금 60,000천원 + 기업부담금 6,000천원 = 사업비 66,000천원

□ **협약 체결 및 지원금 지급**

1) **(협약 준비)** 컨설팅을 통해 선정평가위원회 결과 의견사항을 반영한 수정 사업계획서를 수정 및 보완 제출

2) **(협약 체결)** 수정사업계획서 내 의견사항 반영 여부 확인 이후 협약 체결

3) (기업부담금 입금) 협약 전까지 사업비 전용통장에 기업부담금(지원금의 10% 이상) 입금 후 통장 사본 제출

4) (지원금 지급) 관리기관에서 거래처로 후지급 집행. 월별 지급신청 서류 및 증빙자료를 관리기관이 검토한 후, 인정된 비용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공급기업에 지급(세부 내용은 협약 전 교육에서 안내)

□ **모니터링(진도점검)**

1) 지원사업 수행내용 및 기업 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협약기간 중간에 연 1회 이상 면담 또는 기업방문을 실시할 수 있음

2) 모니터링 실시를 위해 지원기업에 실적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제출된 보고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원기업에 대한 면담 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

3) 모니터링 결과를 사업계획서 또는 차기 평가에 반영할 수 있으며, 모니터링 시 불가피하게 기술·시장 등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목표의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만 주관기관은 협약이 정한 목표 및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

4) 정기적인 모니터링 외 성공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 노력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근무 계획에 맞는 불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.

Ⅶ 사후관리

□ **지원사업 결과물의 사후관리 협조**

1) (결과물의 귀속) 지원사업의 수행 결과로 발생하는 유·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(기업) 소유로 함.

2) (사후관리) 주관기관(기업)은 최종 평가 결과 통보연도부터 **3년간 지원 결과로 인한 성과(매출, 수출, 고용 등) 및 자료를 관리기관에서 요청할 경우, 관리기관에 요청자료를 제출하여야 함.**

3) (이전유지) 주관기관(기업)은 **최초 협약 시 이전한 거주지 및 사업장을 최초협약일 기준 최소 3년간 유지(제한지역 내 이전은 가능)**해야 하며, **관리기관에서 관련 자료(주소 및 사업장 증빙서류 등)제출 및 현장 방문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함.**

Ⅷ 참고사항

□ 사업에 참여하는 자(주관기업, 대표이사, 과제책임자 등)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

□ **사업추진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지원하지 않음**

□ [사업비] 사업비 = 관리기관이 지원하는 지원금 + 기업부담금(현금)

- ○ 장비구입 등 **자산 구매와 관련한 사항은 사업비 계상 불가**
- ○ **기업부담금은 지원금의 10% 이상을 현금 계상 필수**
- ○ 사업수행 시 발생하는 **부가가치세는 전액 기업 부담**
- ○ 평가위원회를 통해 협약기간 및 사업비 조정될 수 있음

□ 본 사업 선정 및 협약에 따른 **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**

※ 기업별도 부담

□ **사업비유용, 협약위배, 자산취득 등의 경우 사업비 전액 환수**

□ **그 외 선정 시 주관기관의 '의무사항'은 [별표 2] 참조**

[별표 1] 지원 제외 대상

□ 지원 제외 대상

① **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(기업)**

< ① 조건 예외 대상 (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 기준) >
1.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
2.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,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
3.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, 파산절차에서 면책 결정이 확정된 자
4. 신용보증기금·기술보증기금의 '재도전·재창업 재기지원보증'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·신용회복위원회의 '재창업 자금지원'을 받은 자

② **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(기업)**

< ② 조건 예외 대상 (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 기준) >
1. 국세징수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
2. 국세·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

③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
④ 의성군 안계면, 영덕군 영해면 등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을 기지원받은 청년, 기업, 단체 등
→ 적발 시 보조금 및 발생이자 전액 환수
⑤ 중소벤처기업부 (舊 중기청) 창업 및 사업화 관련 지원사업*에 선정되어 사업수행 혹은 중단 중인 자(기업)
⑥ 타 중앙정부·공공기관·지자체의 창업 및 사업화 관련 지원사업*에 선정되어 사업수행 혹은 중단 중인 자(기업)
*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, 지식재산권 확보,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(예비)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
⑦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(기업)
⑧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(기업)
⑨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의2(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)에 따라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자(기업)
⑩ 기타 경상북도 도지사 또는 영천시 시장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(기업)
⑪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감사 의견이"의견거절 또는 부적정"(기업)
⑫ 제출서류(신청서 등) 미비(누락, 불성실 작성 등) 신청자
⑬ 협약에 대한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이 불가한 자(기업)
※ 사업 협약 이후 상기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도 협약 해지 및 사업비 전액 환수

□ 창업지원 제외 업종

NO	대상 업종	코드번호
1	- 일반 유흥 주점업	56211
2	- 무도 유흥 주점업	56212
3	-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	91249
4	- 그 밖에 1~3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	-

[별표 2] 지원기업 의무사항

선정 후 협약 시 주관기관(지원기업)의 의무
① '주관기관'은 '관리기관'의 **규정 및 사업의 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함.**
② '주관기관'은 **1차년도 최초 협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**에 사업자등록 상 **'본점 소재지'**와 사업계획서에 의거한 **'대표자·임직원의 주민등록 주소지'**를 각각 **'경북 영천시 금호읍'**과 **'경북 영천시' 내 지역으로 이전**하여야 함. ※ 업종과 무관하게 본점 소재지와 대표자(임직원)의 주민등록 주소지는 별도로 이전하여야 함. ※ 동일한 주소지에 타 지원기업과 사업장을 공동으로 등록할 수 없음.(쉐어오피스 불가)
③ '주관기관'은 최초 협약일로부터 **3년간 휴·폐업, 본점·주민등록 주소지 이전을 할 수 없음.** ※ 단, 관리기관의 승인 후 '제한지역(사업장-금호읍 내 / 거주지-영천시 내)' 내 이전은 가능 ※ '총괄기관'에서 지원하는 주거 지원사업을 통한 거주지 이전 시, 3년 6개월간 필수 유지하여야 함.
④ '주관기관'은 지원받은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을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개발 및 사업화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며, **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.**
⑤ '주관기관'은 '관리기관'이 요청하는 각종 보고서 및 **자료(결과보고서 및 설문조사 등)의 작성 및 제출에 있어 적극 협조하여야 함.**
⑥ '주관기관'은 '관리기관'이 시행하는 현장실사, 불시점검, 중간점검, 평가위원회 등 **각종 점검 및 위원회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함.**
⑦ '주관기관'은 '관리기관' 또는 '관리기관이 지정한 자'의 **관련 서류 열람 및 제출 요청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.**
⑧ '주관기관'은 '관리기관'이 필수참석을 요청하며 제공하는 각종 교육, 멘토링, 컨설팅 등의 **프로그램 및 행사에 필수 참석하여야 함.**
⑨ '주관기관'은 3년간의 '주소 유지기간' 동안 본 사업의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**'근무 계획'을 준수**하고, '관리기관'이 요청하는 **'근무일지'를 양식에 맞추어 성실히 작성하여야 함.**
⑩ '주관기관'은 '총괄기관' 및 '관리기관'이 본 사업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**타 연계 지원에 관하여 적극 협조**하여야 하며, 이와 관련된 **각종 공과금**(월세, 임차료, 관리비 등), **제세금 납부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.**

※ '관리기관'은 '주관기관'이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, **'경고 조치'**를 할 수 있으며, **'경고 조치' 3회 이상 누적 시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.**

※ 전문가를 대동한 불시점검으로 **위장 전입, 공장 미가동 등 부정수급 적발 시** 총괄기관의 권한으로 **전국 광역·지자체에 임직원 명단공개** 및 **손해배상 청구**가 이루어질 수 있음.

[별표 3] 사업비 계상 기준

비목	세목	세세목	설명	비고
직접 사업비	장비 · 재료비	시설·장비 운영비	사업운영 편의를 위한 사무실, 공장, 교육장, 기자재 임차, 시험 분석비 등 사업 관련 시설 및 장비의 유지보수비용 ※ 보증금 불가, 영천시 금호읍 지역에 한정, 임대차 계약서 체결 필수, 협약기간 내만 사용 가능	
		재료 구입비	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재료 구입 ※ 판매 목적의 양산품 제조를 위한 재료구입 불가 ※ 사업종료 1개월 전부터 사용 불가	
		제품디자인비	신제품 또는 기존제품 업그레이드 시 적용되는 제품디자인비	
	활동비	홍보·마케팅비	신문광고, 브로셔, 리플렛 제작, 전시참가비 등	
		용역비	시제품 제작 등 사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비용 ※ 시제품 판매 불가	
		전문가 활용 및 정보수집비	사업추진을 위한 컨설팅비(지원기업 관련 기술, 인사, 노무, 재무분야 등), 국내외 훈련, 자료 구입, 학회 참가비* 등 * 참여인력에 한하여 지급	총사업비 20% 이내
간접 사업비	간접비	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	지식재산권 출원·등록비	직접비 6% 이내

※ 모든 사업비 사용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발행 원칙(간이영수증 불가)